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| | |
|--------|-------|
| 선 람 | 기관위원장 |
| | |

제773호 2010. 7. 30.(금)

차 례

훈 령

-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 ----- 2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7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 ----- 4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83호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----- 9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

2010년 7월 30일

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79호

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

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,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「공연법」의 재해대처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운

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다만,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분야의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79호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년 7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

1. 제정 이유

-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센터의 명칭에 대한 일관성을 기하고,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·보급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전문수행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유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천광역시 각 구의 센터 명칭의 통일
 - ▷ 구의 명칭을 앞에 사용
 -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
(시 노인취업정보센터 ⇒ 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)
- 센터 위탁기간의 변경
 - ▷ 기존 2년 ⇒ 3년으로 변경
 - 위탁기간은 5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례로 결정
- 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신설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복지서비스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(560-4973) 및 FAX(560-4327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▷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- ▷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▷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노인인력개발센터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(이하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를 신설한다.

6의2.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
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 가능

제4조제1항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의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며,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위탁선정위원회”를 “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위탁선정위원회”를 “위탁심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위탁선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위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

1. 노인복지 전문가
2.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
3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서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
5.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③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
-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노인복지담당과장으로 한다

제5조의 다음에 제5조의2를 신설한다.

제5조2(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

1.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사항
2.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사항 심의
3. 제7조의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
4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부의 안건

제6조제3호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수탁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3개월 이전”를 “수탁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업운영 중 위탁운영 의사가 없을 때에는 종료3개월 이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고, “매 회계 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하며, “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”을 “매년 10월 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고 “3월말”를 “2월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구청장은”을 “구청장 및 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기타
관련 법령을 준용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-883호

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2010. 1.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합니다.

2010. 7. 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결정·공시 개요

가. 결정·공시 대상 : 총 393필지

- 2010. 1.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: 391필지

- 과년도분(2002. 1. 1 ~ 2010. 1. 1일 기준) 직권정정 : 2필지

나. 필지별 처리결과 : **구 토지정보과 비치**

2. 행정소송 안내

가. 결정·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(불복)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결정·공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문의사항

○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 032-560-484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